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7차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지급 의무기한 신설, 국내대리인 지정 등〉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31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역외 적용 규정 신설 및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3
2. 대금지급기한 신설	12
3. 동의의결제도 도입	18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9. 10.
- (3) 회 부 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직구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남과 동시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판매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온라인판매사업자(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20조의4 신설).

또한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판매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중개업자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기한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통신판매업자가 마땅히 정산받아야 할 판매대

금이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익추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음.

이는 피해액이 최소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영세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정산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판매대금의 정산 주기를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 및 교환이 완료되어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한편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그 특성상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시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공정거래법 등에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역외 적용 규정 신설 및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 개정안은 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②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판매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여부를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20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u> <u>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u>
<u><신설></u>	<u>제20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u> <u>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판매사업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u>

현행	개정안
	<u>제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u> 1. <u>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u> 2. <u>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u> 3. <u>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른 자료·물건 등의 제출</u> 4. <u>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에 따른 문서의 제출</u> ② <u>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u> ③ <u>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u> 1. <u>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u> 2. <u>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u>

현행	개정안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	<u>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u> <u>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온라인판매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u> <u>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온라인판매사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u> <u>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판매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u>⑦ 제3항에 따른 지정 사항의 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 ----- ----- ----- -----

현행	개정안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1. ----- ----- ----- ----- ----- -----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2조제1항 ----- ----- -----제32조의4제2항-----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임.

<소매판매액 중 온라인쇼핑 거래액 비중>

(경상금액, 억원, %)

구분	소매판매액(A)	온라인쇼핑 거래액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B) ¹⁾	비중(B/A)
2021년	5,923,782	1,902,231	1,454,955	24.6
2022년	6,255,518	2,111,236	1,552,633	24.8

구분	소매판매액(A)	온라인쇼핑 거래액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B) ¹⁾	비중(B/A)
2023년	6,397,192	2,288,607	1,627,028	25.4

1) 「여행 및 교통서비스, 문화 및 레저서비스, 이쿠폰서비스, 음식서비스, 기타서비스 거래액」 제외
(자료: 통계청 2024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2024년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통계 포함))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21년	5,257,402	1,193,768	1,223,034	1,248,833	1,591,767
2022년	5,945,356	1,433,886	1,477,039	1,446,370	1,588,061
2023년	6,681,913	1,506,454	1,603,867	1,607,873	1,963,719

(자료: 통계청 2024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2024년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통계 포함) 재구성)

- 해외직구의 증가 추세와 함께 소비자 상담·분쟁 및 관련 피해사
례도 증가하고 있으나¹⁾, 현행법에서 해외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최근 3년간 국제소비자상담 접수 추이>

(단위: 건)

2021년	2022년	2023년
14,086	16,608	19,418

(자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이에 개정안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
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소비

1)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16.9% 증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4. 3. 29.)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해외 물품구매 및 서비스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1,000명)을 대상으로 국제거래 이용 및 피해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해외직구 이용자의 10%, 해외 숙박·항공 이용자의 22% 이상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함(국제거래, 물품구매보다 서비스거래에서 피해경험 많아,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23. 8. 31.)

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 참고로 역외적용 규정은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²⁾에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시장에 적극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경우 외에도 한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동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역외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상으로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42조와 제47조³⁾에 따라 국내적 강행규정인 전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상거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사법 및 해외 유사 입법례⁴⁾ 등을 참고할 때 현행법의 개정이 없이도 법 해석을 통해 해외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가능하며, 그간 법 적용의 심결례⁵⁾가 다수 확립되어 있어 별도의 규정 마련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 한편, 개정안 제20조의4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소비자

3) 「국제사법」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①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는 계약의 상대방(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이하 “일상거소지국”이라 한다)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 외의 지역에서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을 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3. 사업자가 소비자로서 하여금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소비자계약”이라 한다)의 경우에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소비자계약의 당사자 간에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한 경우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서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47조(소비자계약) ①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②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③ 소비자계약의 방식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

4) 일본은 전기통신사업관 관련 지침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외국법인의 기준을 i) 서비스가 일본어로 제공, ii) 유료 서비스 결제 통화가 일본 엔화를 포함, iii) 광고, 판촉 등이 일본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5) 구글, 아고다, 부킹닷컴('22년), 테슬라('23년), 에어비앤비('24년) 등 해외사업자 제재

피해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피해 구제 및 원활한 조사 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음⁶⁾.

- 참고로,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은 2018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로,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시행될 예정임.

<국내대리인 관련 타 입법례>

구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 사업법	전파법	게임산업법
대상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자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대리업무	① 과기부 또는 방통위에서 요구하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②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요구하는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① 이용자 요구 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② 과기부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③ 이용자 보호 업무 ④ 방통위의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①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② 과기부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① 문체부 등의 보고의 이행 ② 게임물 표시 의무의 이행

6) 다만,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개정안이 국내대리인에게 단순한 절차적 의무를 넘어 통신판매자나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실질적인 영업조직을 설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과도하다는 입장이며, 한미FTA의 현지 주재 의무 금지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인 지정이 새로운 사무소 등의 설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제12.5조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구분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 사업법	전자법	게임산업법
미지정시 제제수단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 등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판매사업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온라인판매사업자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⁷⁾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소재 전자상거래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가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료요청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금지급기한 신설

-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 및 교환이 완료되어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5(판매대금의 지급 기한)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해당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 및 교환이 완료되어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 및 이

리하는 경우 그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⁸⁾,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는 연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고시하고 있음⁹⁾.

- 하지만, 통신판매중개거래에서 상품 판매대금의 지급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 업체별로 구매확정일로부터 1영업일에서 60일까지 다양하게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¹⁰⁾.

<주요 업체 정산주기>

온라인 플랫폼	정산주기
쿠팡	▶ 주정산 : 익일부터 15일 이내 정산 - 주정산은 70% 정산 - 정산소비자반품, 환불, 하자에 의한 청약철회 등으로 30%는 익월 1일 정산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 ②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I.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상품판매대금등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판매대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10)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2024. 9. 23.)에 따르면, 공정위의 28개 업체 대상 실태조사 결과, 14개 업체가 청약철회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일 정산하고 있으며, 이 중 13개 업체가 5일 이내 정산 완료하고 있음. 또한, 28개 오픈마켓 플랫폼의 평균 정산주기(산술평균)는 구매확정일로부터 약 22.9일임.

온라인 플랫폼	정산주기
	▶ 월정산 : 매월1일~말일기간 산정,익월15일 정산 ▶ 빠른정산 : 구매확정일 +다음날 오전 10시 90% 쿠팡 셀러 체크카드 형태로 정산
카카오	▶ 구매확정일 + 3영업일
네이버	▶ 일반정산 : 구매확정일+1영업일 정산(결제 발생일로부터 평균 약 9일) ▶ 빠른정산 : 집화완료일+1영업일 정산(결제 발생일로부터 평균 약 3일) * 빠른정산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공됨(별도 추가 이용료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11번가	▶ 판매금액은구매확정일+ 2영업일정산 ▶ 구매회원이직접구매확정을하지않은경우에는상품배송완료일로부터7일경과 후8일차에자동으로구매가확정 단, 배송완료를확인할수없는경우(배송추적상품) 상품을발송처리한날로부터 29일차에자동으로구매확정
무신사	▶ 매월말판매마감후익월10일(공휴일인경우다음영업일) 판매대금정산 * 소비자의'구매확정일'을기준으로매월말판매마감후판매대금정산
G마켓·옥션	▶ 일반정산: 1) 구매결정/반품완료/교환완료+ 1영업일 정산 2) 자동구매결정: 배송완료일+8일 3) 배송추적불가시 발송처리일부터 국내배송은 +28일, 해외배송은 +45일 ▶ 빠른정산: 스마일배송 출고 +1영업일 - 90%가 정산되며, 10%는 소비자 피해 시 환불보증금 보유하며 10일 후 즉시 정산
인터파크	▶ 구매확정(고객이 수동,자동) -> S-Money 적립(익영업일) -> 출금(매주 월요일, 전주 토~금일)->판매자 입금 ▶ 구매확정 기준으로 일정산(S-Money적립*)하여 주단위 출금 * S-Money 적립(정산) : 구매확정 후 익 영업일 적립(정산) ▶ 출금 방식 : 주 1회 (매주 '토요일~금요일' S-Money 출금 신청 건에 대하여 차주 월요일에 일괄 지급)
롯데쇼핑 (롯데ON)	▶ 정산프로세스 1.고객에게상품이배송완료되는시점이후고객은구매확정을할수있고,구매확정을 하지않으면자동으로+8일차(자연일)에구매확정 * 8일까지 소요되는 이유 : 전자상거래법상 고객의 단순 변심 청약철회 의 무기간(7일)을 준수한 기간 2.구매확정일+1영업일판매자정산예치금으로적립 3.정산예치금으로적립된금액은판매자(셀러)가언제든지출금신청가능하고1영업 일후정산 ▶ 셀러는 구매확정일+1영업일 즉, 9일차에 판매자 예치금으로 입금하면 판매자는 10일차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금신청 가능 법정기일 준수 및 정산(수수료 등 계산) 작업을 한후 최대 3일 소요되는 정산프로세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그런데,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이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다면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사업자금확보 및 유통이 어려워 경영상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①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 및 교환이 완료되어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② 그 기한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며, ③ 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④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별로 정산주기가 상이한 상황에서 대금 정산지연에 따른 이용사업자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B2C)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어¹¹⁾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소비자 권익의 보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 행위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규율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업종별 특성¹²⁾, 정산주기 단축에 따른 추가인력 투입의 부담¹³⁾, 장기적으로 자본력이 있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¹⁴⁾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관계(B2C)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업자간 거래관계(B2B)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오프라인 소매업자의 정산 주기를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라는 입장임.

○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한 벤처 스타트업을 포함할 경우 유동성 위축, 추가비용 부담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시장지배적 영향력이 큰 일부 e커머스사로 한정하여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하는 입장을 제시함¹⁵⁾.

12) 숙박·여행·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용역의 경우, 구매 확정일이 아닌 실제 공급일을 정산기준일로 설정

13) 온라인 유통업체 의견(중소 e커머스의 경우 월 정산의 경우보다 주 정산의 경우 4배 이상의 인력 추가 투입 필요)

14) '정산기한 단축' 반길 줄 알았는데...영세 상인 딜레마(2024. 9. 3. 뉴스1)

15) 정산기준일을 구매확정일로 할 경우 매일 정산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므로 월단위, 주단위로 정산 중인 유통업체에 대규모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제도 개편 시 월 단위 정산 불가능), 대규모 e커머스사는 자체적으로 30일 이내 정산 체계를 이미 운영 중이므로 제도 준수비용의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임(참고로 EU도 30일 내 대금 지급 의무화).

3. 동의의결제도 도입

-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32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의의결의 근거가 된 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사업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의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현행	개정안
	<u>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u> <u>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u> <u>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u> <u>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거래질서의 회복이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u> <u>3. 피해보상 등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u> <u>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이 조에서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신속한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한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구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를결을 하는 것</u>

현행	개정안
<신설>	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제32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

현행	개정안
	<u>다. 다만, 시정방안이 수정되어 다시 의견제출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u> <u>1. 해당 행위의 개요</u> <u>2. 관련 법령 조항</u> <u>3. 시정방안(제3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u> <u>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u> <u>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u> <u>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u>

현행	개정안
	<u>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에게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또는 소비자원에 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u> <u>⑦ 제6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현황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u> <u>⑧ 제6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은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그 이행을 게을리하</u>

현행	개정안
<신설>	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의견 조회 방법, 심의·의결 절차, 조정원 또는 소비자원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2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 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행	개정안
<신설>	<u>동의를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u>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를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를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를결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32조의5(이행강제금 등) ① <u>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를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를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u> ② <u>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u>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시정조치, 과징금)와는 별개로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함.

- 그러나 개인별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그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커서 별도의 소송 제기를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거래질서의 개선 및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임¹⁶⁾.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와 그 내용, 요건 등이 유사하나, 시정방안 수정 시 동의의결 의결제출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법 상 동의의결제와 비교>

구분	공정거래법 §89, §90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신청요건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개시요건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 직접 보상 필요성	좌동
동의의결 요건	① 법 위반 판단 시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②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 또는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①, ② 모두 충족 필요)	신속한 거래질서 회복 또는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소비자의 피해 구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동의를결제도는 미국의 당사자주의적 분쟁해결시스템(Adversarial Dispute Resolution System)의 산물로서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단계에 이르기 전에 피심인과 경쟁당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일련의 절차임.

○ 우리나라에서는 한·미 FTA 합의사항¹⁷⁾에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이 포함됨에 따라 2011년 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4. 시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6. 시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7. 시행)에 확대 도입되었음.

□ 동의를결제도는 신속한 사건 해결을 통해 소비자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구분	공정거래법 §89, §90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동의를결 의견조회기간	30일 이상	30일 이상 (단, 시정방안 수정 시에는 30일 이내)

17) (한미 FTA 협정문 제16.1.5)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국의 당국에게 그 집행 조치의 대상자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자신의 행정적 또는 민사적 집행조치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5. Each Party shall provide its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its national competition laws with the authority to resolve an administrative or civil enforcement action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subject of such an enforcement action.

○ 특히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시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의 과다 소요가 우려되며,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 개별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 및 피해 상황의 신속한 해소를 위하여 동의의결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2011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동의의결 신청건수는 총 28건(인용 13건, 기각 11건, 진행 중 4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¹⁸⁾ 동 제도의 활성화·내실화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동의의결제도 운영 현황>

신청일	사업자	내용	의결일 (기각 결정일)	처리 결과	적용법률
13-11-20	네이버(주)	네이버(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14-05-08	인용	공정거래법
13-11-20	네이버비즈니스 플랫폼(주)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14-05-08	인용	공정거래법
13-11-21	(주)다음 커뮤니케이션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14-05-08	인용	공정거래법

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사례 없음

신청일	사업자	내용	의결일 (기각 결정일)	처리 결과	적용법률
13-11-06	에스에이피 코리아(주)	에스에이피코리아(주)의 거래상지 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 의결에 대한 건	14-12-04	인용	공정거래법
14-11-21	롯데쇼핑(주) (롯데시네마)	롯데쇼핑(주)의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 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14-12-02	개시 신청 기각	공정거래법
14-11-21	씨제이 씨지브이(주), 씨제이 이앤엠(주)	씨제이씨지브이(주)와 씨제이이앤 엠(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씨제이씨지브 이(주)와 씨제이이앤엠(주)의 동의 의결 개시신청에 대한 건	14-12-02	개시 신청 기각	공정거래법
14-08-27	마 이 크 로 소 프트 코포레 이션	마이크로소프트 코포레이션(MS) 및 노키아 코포레이션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 련 MS의 동의의결에 대한 건	15-08-24	인용	공정거래법
15-10-20	에스케이 텔레콤(주)	에스케이텔레콤(주)의 부당한 광 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에 대한 건	16-09-29	인용	표시광고법
15-10-29	(주)케이티	(주)케이티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16-09-29	인용	표시광고법
15-10-27	(주)엘지유플 러스	(주)엘지유플러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16-09-29	인용	표시광고법
16-11-18	퀄컴 인코포 레이티드 외 2개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 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 한 건	16-12-15	개시 신청 기각	공정거래법
17-05-24	현대모비스(주)	현대모비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 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17-11-27	개시 신청 기각	공정거래법
18-04-24	(주)엘에스 외 3개사	엘에스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 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 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18-07-02	개시 신청 기각	공정거래법
18-08-13	(주)골프존	(주)골프존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 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 시신청에 대한 건	18-09-18	개시 신청 기각	공정거래법
19-03-16	(주)엠티알	(주)엠티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19-09-02	개시 신청 기각	표시광고법
19-02-28	남양유업(주)	남양유업(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 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 한 건	20-05-28	인용	공정거래법

신청일	사업자	내용	의결일 (기각 결정일)	처리 결과	적용법률
19-06-04	애플코리아(유)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21-03-16	인용	공정거래법
21-05-12	삼 성 전 자 (주) 외 4개사	기업집단 「삼성」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21-06-04	개시 신청 기각	공정거래법
22-04-08	(주)스 타 필 드 하남	(주)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22-11-24	인용	공정거래법
22-07-13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3개사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23-06-30	기각	공정거래법
22-09-29	(주)한솔	(주)한솔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24-06-07	인용	가맹사업법
22-10-13	(주)유진종합건설	(주)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24-03-29	인용	하도급법
23-10-19	(주)카카오모빌리티	(주)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23-12-22	개시 신청 기각	공정거래법
24-05-30	(주)지에스리테일	(주)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진행 중	진행 중	대규모유통업법
24-05-30	(주)비지프리에이	(주)비지프리에이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진행 중	진행 중	대규모유통업법
24-05-30	(주)코리아세븐	(주)코리아세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진행 중	진행 중	대규모유통업법
24-05-30	(주)이마트24	(주)이마트24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진행 중	진행 중	대규모유통업법
24-04-29	(주)리만코리아	(주)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건	24-10-21	개시 신청 기각	방문판매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한편, 안 제33조의5에서는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동의의결의 이행력 담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주요국가에서 동의의결 미 이행 시 도입하고 있는 제재수단은 아래 표와 같음.

<해외 주요국의 동의의결 제도 및 미이행시 제재수단>

국가	도입여부	근거	미이행시 제재수단
미국	○	연방행정절차법	1일당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벌금(Civil penalty) 부과
일본	○	독점규제법 제65조	형벌(시정조치 불이행과 동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 벌금
EU	○	Council Regulation 9조	1일당 전년도 1일 평균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서위반벌금 부과
한국	○	공정거래법 제51조의4	동의의결 미이행시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21-12 전자상거래 소비자법제 분석 연구, p.264)

-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액·다수 피해가 많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